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9. 2. 4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경직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직장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

2. 수정 주요골자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위원 선임에 있어서 일부조문중 “선임되도록 할것”을 “선임되도록 한다.”로 하고 “선임할 것”을 “선임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안 제8조 제3항 제1-2호)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3항 제1호중 “선임되도록 할 것”을 “선임되도록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선임할 것”을 “선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협회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② (생 략)</p> <p>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 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 하여야 한다.</p> <p>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 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u>선임되도록</u> <u>할 것.</u></p> <p>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 으로 <u>선임할 것.</u></p>	<p>제8조(협회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② (생 략)</p> <p>③ _____ _____ _____</p> <p>1. _____ _____ _____ <u>선임되도록</u> <u>한다.</u></p> <p>2. _____ _____ _____ <u>선임하여야 한다.</u></p>